

심사보고서

-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21
----------	-----

2016.11.30.(수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엄재창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6년 11월 22일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1월 23일

(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엄재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기존 조례에 명시된 각종 법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이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으로,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이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

를」로,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이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으로 명칭 변경
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오성일)

- ‘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기존 조
례에 명시된 각종 법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
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,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표준화법」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등 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기간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당한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사용권 취소) ① 도지사는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「<u>농산물품질관리법</u>」, 「<u>친환경농업육성법</u>」, 「<u>산업표준화법</u>」, 「<u>축산물가공처리법</u>」 등 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기간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당한 경우</p>	<p>제9조(사용권 취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<u>농수산물품질관리법</u>」, 「<u>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, 「<u>산업표준화법</u>」, 「<u>축산물 위생관리법</u>」 등 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기간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당한 경우</p>

관 계 법 령

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,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축산물 위생관리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·도살·처리와 축산물의 가공·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